

「2025년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」 데이터센터 고효율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공동협력 지원사업

1 사업 목적

- ☐ 데이터센터 선도기업의 부산 유입을 촉진하고, 선도기업과 지역 기업 간 데이터센터 기술 공동협력을 통해 부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함에 있음.
- ☐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선도기업의 부산 유입 촉진을 통한 데이터센터 기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경쟁력 강화
- ☐ 데이터센터 선도기업과의 협력으로 지역 내 기존 데이터센터 기업의 기술 기획·고도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, 이를 통한 지역 내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전·후방산업 생태계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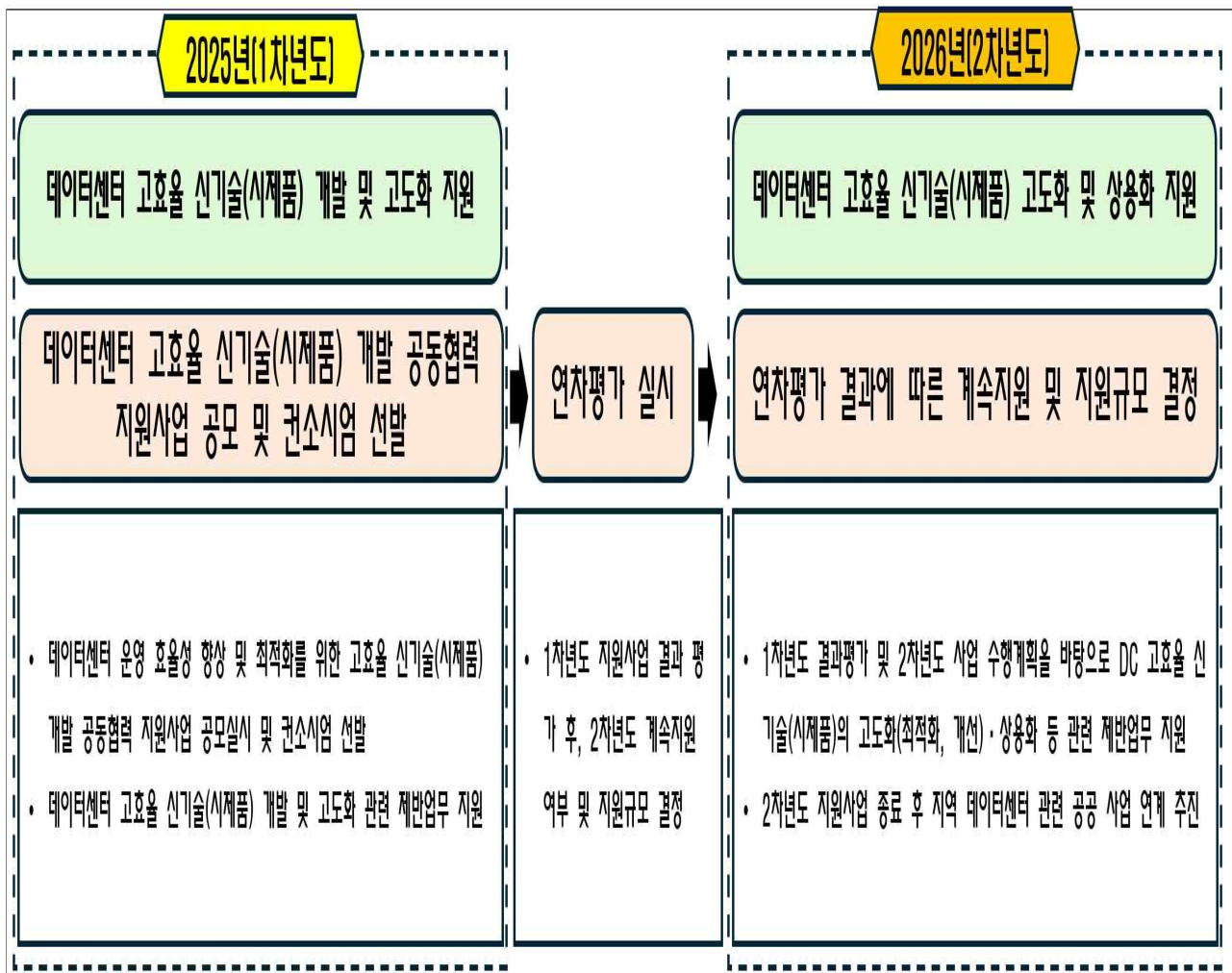
2 사업개요

- ☐ 사 업 명: 데이터센터 고효율 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공동협력 지원
- ☐ 사업기간: 2025. 04. ~ 2025. 12. ※총 2개년(2025~2026) 사업실시, 연차평가를 통한 계속지원 결정
- ☐ 사업예산: 최대 500백만원(지원금) + 민간부담금
 - ▷ 지 원 금: 총 5개 과제 / 과제당 최대 150백만원
 - ▷ 민간부담금: 총 사업비의 50% ~ 100% 이내
- ☐ 사업내용: 데이터센터 고효율 신기술 기반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등 관련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
- ☐ 사업목표
 - ▷ 데이터센터 고효율·신기술 기반 기술 개발(시제품) 과제당 1건 내외
 - ▷ 기술 및 시제품 개발 과제당 인력 고용 1명 이상
 - ▷ 기타 참여 컨소시엄이 제안하는 자율성과 2개 이상(매출증가, 인력양성 등)

□ 지원개요

구분	내용
지원분야	◦ 데이터센터 고효율·신기술(시제품) 개발, 고도화를 위한 제반업무
지원대상	◦ 데이터센터 고효율·신기술(시제품) 수요처가 확보된 컨소시엄(최대 5개)
컨소시엄 구성요건	◦ 주관: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부산시 소재의 기업 ※ 부산기업 단독 참여 가능 ◦ 참여: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·대학·연구소 등(지역무관) ※ 수요처: 부산 지역 내 데이터센터 운영사 및 관련 기업(IDC 운영사 포함)
지원방식	◦ 데이터센터 고효율·신기술(시제품) 개발 관련 제반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 ◦ 데이터센터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 지원(데이터센터 운영사, EDC 데이터센터 입주기업 등)
지원기간	협약체결일 ~ 2025. 11. ※ 연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(2026년) 계속지원 여부결정
지원규모	◦ 과제당 최대 150백만원 ※ 사업 공모 및 사업심의를 통한 지원예산 차등지원 ◦ 기업 성격에 따른 민간부담금 매칭필요

□ 사업 추진 프로세스(안)



□ 지원분야

- ▷ 데이터센터 분야별 고효율 신기술(시제품) 개발, 고도화를 위한 기업 간 공동협력 추진에 따른 맞춤형 지원

지원분야	기술·시제품 적용 분야의 대상(예시)	
컴퓨팅·IT인프라 (Computing Space)	- 서버,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컴퓨팅 및 IT 장비, 인프라 분야	
시설 인프라 (Supporting Infra)	전력공급	- PDU, UPS, 배터리, 발전기, 수배전설비, STS 등
	냉각	- 냉각탑, 냉동기, 실내기, 고효율펌프, 항온항습 등
운영관리 (Operation Space)	- DCIM(DataCenter Infrastructure Management), 보안 및 방재 등	

※ 참여 컨소시엄의 보유 기술 및 개발 수요에 따라 중복 선택 가능

□ 지원대상

- ▷ 데이터센터 고효율 신기술(시제품) 개발 및 고도화 수요가 있고, 기술(시제품) 수요처가 확보된 최대 2개의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
▷ 컨소시엄 구성요건

- 주관기업: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부산시 소재의 기업
- 참여기업: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내외의 기업·대학·연구소
- 수 요 처: 부산 지역 내 데이터센터 운영사 및 관련 기업(IDC 운영사 포함)
※ 수요처에 대한 증빙 제출 必(기술수요·도입 협약서/확인서 등)
- 특정 기업·기관의 참여인력이 전체 참여인력의 5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
- 부산시 소재의 기업인 경우, 단독참여 가능

□ 지원방식

- ▷ 참여 컨소시엄 수요에 따른 단계·분야별 DC 고효율 신기술(시제품) 개발 및 고도화 관련 제반업무에 대한 사업비 및 네트워킹 지원

- 사업비 지원
 - 데이터센터 고효율 신기술(시제품) 개발 및 고도화 추진에 소요되는 인건비·운영비·연구용역비 등 지원
- 네트워크 지원
 - 지역 데이터센터 관련 연계·협력 네트워크(데이터센터 운영사, EDC 데이터센터 입주기업, 부산 데이터센터 산업 협의체 등) 제공

□ 지원기간 및 규모

▷ 지원기간: 협약체결일 ~ 2025. 11.

▷ 지원규모: 총 500백만원(지원금) + 민간부담금

사업연도	지 원 금	민간부담금	총 과제비
2025년 (1차년도)	최대 500백만원 (최대 5개 과제, 과제당 최대 150백만원)	총 사업비의 50%~100% 이내	최대 500백만원 + α
합계	최대 500백만원	-	최대 500백만원 + α

※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은 수행주관·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매칭비율, 현금부담비율 상이함.

※ 연차평가 결과,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과제 수,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.

- 지원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 차등지원(최대 150백만원)

- 총과제비는 지원금과 기업의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로 구성

- 컨소시엄 수행주관기업, 수행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각각 편성한 예산 비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준용해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 편성

※ 예산편성 시, 주관·참여 기업의 지원금 합계는 컨소시엄 전체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.

<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편성기준 >

1. 총과제비 중 지원금 지급기준

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대기업 및 공기업인 경우	그 외(학교 등)의 경우
해당 수행기업 총과제비(지원금+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			
75% 이내	70% 이내	50% 이내	100% 이내

2. 총과제비 중 민간부담금 현금부담기준

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대기업 및 공기업인 경우	그 외(학교 등)의 경우
해당 수행기업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			
10% 이상	13% 이상	15% 이상	필요시 부담

3. 총과제비 편성예시

기업구분	지원금 편성액	민간부담금	총과제비
(수행주관) 중견기업	80백만원 (총 사업비의 70% 이내)	35백만원 (현금 4.55백만원 이상)	115백만원
(수행참여) 중소기업	70백만원 (총 사업비의 75% 이내)	24백만원 (현금 2.4백만원 이상)	94백만원
컨소시엄 합계	150백만원	59백만원	209백만원

- 해당연도 사업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총 2회(협약체결 후, 중간점검 후)에 걸쳐 지급

- 본 사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며, 지원금은 컨소시엄의 주관기업(기관)에 일괄 지급 됨 ※ 지원금(사업비) 정산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컨소시엄 주관기업(기관)에게 있음

- 「ICT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」에 참고하여 과제예산 편성이 가능하며, 사업심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 후 조정 및 집행

- 해당 과제는 R&D가 아닌 비R&D로, 간접비/연구수당 산정 불가하며, 기술료 미징수

-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의 구체적인 사업 수행방안을 제안해야 하며, 데이터센터 고효율·신기술(시제품) 개발 및 고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이에 대해 기능명세·수행계획·활용계획 등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함.
- ▷ (추진체계)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컨소시엄의 구성 체계 및 역할 등 구체적인 컨소시엄 사업 추진 수행방안 제안
- ▷ (개발계획) 데이터센터 고효율·신기술(시제품) 개발 배경 및 필요성과 개발을 위한 2개년 로드맵 제안
- ▷ (주요내용) 공동협력을 통한 데이터센터 고효율·신기술(시제품)의 차별성, 핵심 기술 개발수준 목표, 기술 수요처 확보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 제안
- ▷ (활용계획)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(시제품)의 실증, 상용화 등의 사업화를 위한 향후 활용계획 제안(기술개발성과활용계획)
- ▷ (제안서 작성) 공고상 양식을 준수하고, 30장 이내로 작성하며 주요내용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
- 지원사업의 컨소시엄은 제안한 사업수행계획을 바탕으로 아래의 성과지표를 달성해야 함

< 성과 목표 지표(안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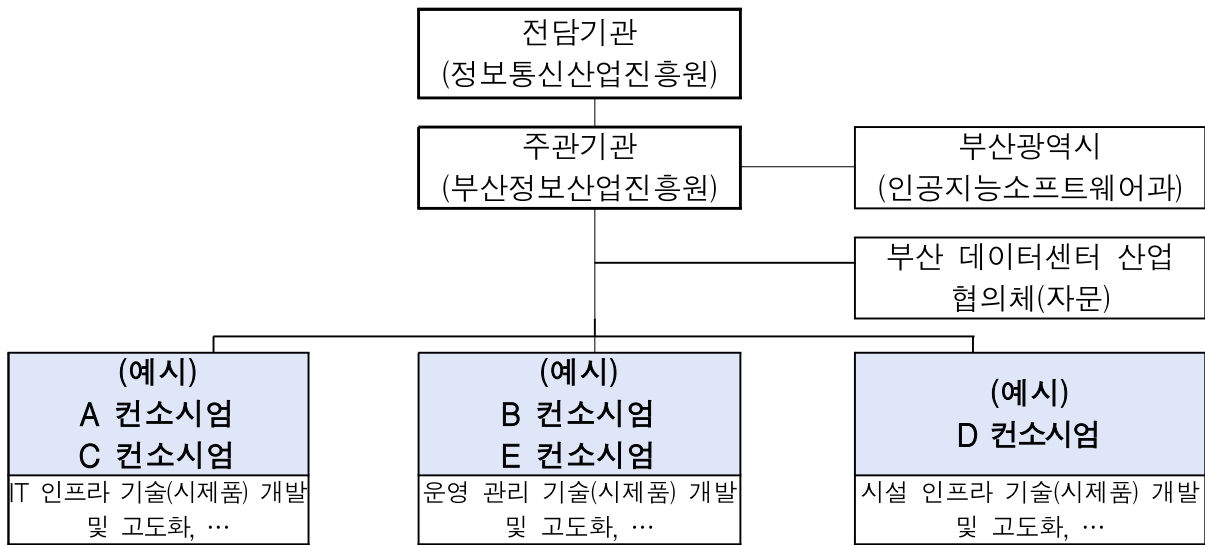
구분	지표명	목표치	측정방법
공통성과(필수)	기술(시제품) 개발	1건	기술적·경제적 성과 등 기술(시제품) 개발 결과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성과물 (ex 특허, 실용실안, 학술지 게재, 사업화, 제품화 등)
	인력창출(고용)	1명 이상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
자율성과 (2개 이상)	(예시) 매출 증가율	10% 이상	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
	(예시) 기업 경쟁력강화**	5명 이상	데이터센터 전문인력 직무 교육 이수인원

* 자체 테스트(고도화)는 불인정되며 국내공인시험기관 등 제3자 검증이 가능한 기관에서 수행한 품질 검증 결과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측정

** 자체 교육은 불인정되며, 데이터센터 전문교육 기업 또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등 지원기업의 외부에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 직무 교육을 이수한 결과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측정

*** 필수목표의 측정방법은 임의로 수정하여 작성할 수 없으며 상기 표에 제시된 증빙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함.

□ 추진체계



구분	주요역할
전담기관(NIPA)	◦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전담기관
주관기관(BIPA)	◦ 데이터센터 고효율 신기술 개발 및 고도화 공동협력 지원사업 총괄 운영·관리
컨소시엄(주관·참여기업)	◦ 과제 수행 및 종합적 관리(참여진 구성, 보고서 작성 총괄 등)

□ 추진일정(1차년도)

추진내용	세부내용	추진일정(안)
공고 및 접수	·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	06. 03. ~ 06. 16.
↓		
서류 적합성 검토 및 발표평가	· 제출서류 검토 · 세부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종합평가 · 70점 이상 과제 대상 사업심의(예산) 검토	6월 3주차 ~ 4주차
↓		
협약체결 및 사업비 1차 지급	· 최종 과제수행계획서 접수 · BIPA ↔ 수행기관 협약체결	6월 4주차 ~ 7월 1주차
↓		
착수보고회	· 담당 간사소개 및 사업 수행 관련 설명회 개최 · 컨소시엄 사업착수 보고	6월 4주차 ~ 7월 1주차
↓		
사업수행	· 컨소시엄별 기술(시제품) 개발 및 보고서 작성	협약체결일 ~ 11월
↓		
중간보고 및 사업비 2차 지급	·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컨설팅, 사업비 2차 지급	9월 1주차
↓		
1차년도 연차평가	· 사업수행계획서 / 1차년도 수행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 · 2차년도 계속 지원여부 결정	~ 11월 4주차
↓		
지원금 정산 및 1차년도 사업 종료	·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및 반납 (기간연수)	~ 12월 2주차

*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전담 및 주관기관(재)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

□ 과제 점검 및 평가

▷ (선정평가) ①서류 적합성 검토 → ②발표평가 → ③사업심의 순서로 컨소시엄의 개발과제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최종지원과제 수행기관 선정

▷ (중간점검) 컨소시엄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중간 산출물을 바탕으로 내·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제 수행 내역 중간 점검 실시

- 과제 수행계획서 대비 주요 지표 달성 여부, 기추진 현황, 사업비 집행 내역 등을 중심으로 점검

※ 컨소시엄은 중간보고서, 사업비 집행 실적 등 자료 요구에 대해서 요청 기한 내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- 수행 컨소시엄이 과제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(수행 부진, 사업비 유용 등), 주관기관(BIPA)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▷ (연차평가) 컨소시엄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에서 “합격” 또는 “불합격” 평가

평가등급	매우 미흡	미흡	보통	우수	매우 우수
점수구간	60점 미만	60점 ~ 69점	70점 ~ 79점	80점 ~ 89점	90점 이상
평가결과	불합격		합격		

- 평가 결과가 “불합격” 인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여부 판정 및 지원금 환수 등을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음

※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(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)

- 연차평가 결과가 “합격” 인 경우 해당 과제의 2차년도(2026년) 사업계획 심의를 거쳐 계속 지원을 실시.

- 연차평가 결과가 “불합격” 인 경우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년도 사업 중단 등 '25년 평가추진계획 등의 절차에 따라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음.

- 과제 종료에 따른 최종 보고서 및 산출물 등 제출 협조 (상세 일정 및 평가 계획 과제 종료 전 별도 안내 예정)

▷ (결과활용) 평가 결과는 추후 동 사업에 기 수행기업이 고도화 또는 타 과제로 지원할 시 평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

□ 평가절차

- ▷ 3단계 검토·평가: ①서류적합성 검토 → ②발표평가 → ③사업심의
- (서류적합성검토) 주관기관(BIPA)의 제출서류 형식요건 적합성 등 사전 검토
 - ※ 제출서류 사전검토 후 일부 미비서류에 대하여 주관기관에서 추가요청 및 접수 가능
 - (발표평가) 서류검토 기반 과제수행계획서의 세부내용 질의응답을 통한 종합평가 추진, 지원 대상 선정
 - (사업심의) 지원 대상 과제는 사업심의를 통해 사업비 편성 내용, 적정성 평가 후 최종 지원과제로 선정

발표평가 추진계획(안)

- 분과구성 : 접수된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, 데이터센터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위원 6명 내외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운영
- 발표일자 : 6월 4주차(06.23. ~ 06.27.) 중 실시 ※ 실제 평가일시 확정 후 지원기업을 통해 개별 연락 예정
- 발표시간 : 컨소시엄 별 30분 내외(제안설명 15분, 질의응답 15분)
- 발표자료 : 제출 제안서 기반 PPT 발표 (20장 내외)
- 발 표 자 : 제안 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컨소시엄 주관기업 총괄책임자가 직접 진행하며,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까지 입실 가능
- 유의사항 : 발표평가 불참 시 지원포기로 간주, 선정대상에서 제외

* 상기 발표평가의 경우 전문기관의 사정, 과제접수 현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□ 가점사항

- ▷ '24년도 그린DC 고효율 신기술 과제발굴 기획 지원사업 참여기업 포함 여부에 따라 가점 제공(2.5점)
- 본 사업은 부산 지역의 데이터센터 기업의 지속적 성장,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, 기운영했던 그린DC 고효율 신기술 과제발굴 기획 지원사업 참여기업에 대하여 가점 적용
 - ※ 기획지원사업 기획제안서 및 제출서류(사업참여확인서, 사업자등록증)을 기준으로 가점 부여
- ▷ 2개 이상의 개발 과제 수요처를 확보한 경우 가점 제공(2.5점)
- 수요처 확보는 개발 및 고도화 이후 기술(시제품)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 연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, 과제의 실효성 확보 및 파급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함에 따라 2개 이상의 개발 과제 수요처 확보 시 가점 적용

□ 지원대상 선정

- ▷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평점이 높은 순으로 심의대상 선정, 별도의 사업심의를 추진을 통해 최종 과제선정
 -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·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점수 산출
 -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심의를 통한 사업비 편성내용, 적정성 검토를 통한 최종 지원과제로 선정
- ▷ 선정된 지원과제의 최종 점수에 따라 총 500백만원의 지원예산 내에서 차등지원(최대 150백만원)

□ 동점자 처리기준

- ▷ 지원대상 과제 선정 시 발표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
 - 데이터센터 고효율·신기술(시제품)의 수요처가 많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확보된 수요처가 동일할 경우, 과제의 필요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

□ 평가 및 선정 기타사항

- ▷ 평가 총점수가 70점 이상인 컨소시엄이 없을 시 재공고
- ▷ 신청 컨소시엄 접수 건이 1건 이내더라도 총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우선지원 대상으로 사업심의 추진

□ 연차평가

- ▷ 1차년도 사업수행결과(개발보고서, 성과활용계획서, 성과지표증빙, 산출물 등) 및 2차년도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참여한 연차평가를 실시하며, 평가결과 “합격” 혹은 “불합격”에 따른 계속 지원 여부 결정
- ▷ 계속지원 결정 후 1차년도 사업심의와 동일하게 2차년도 사업심의 실시 (사업수행계획서 수정 및 보완, 사업비 편성 내용 등의 적정성 검토)

□ 평가기준

부문	평가항목	세부내용	배점
과제의 필요성 (30)	산업적 타당성	데이터센터 산업 정책 및 현안과의 부합성	5
	기술협력·사업화 과제 필요성 및 시급성	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제반여건의 안정성	15
	기술협력·사업화 과제 독창성 및 기존과의 차별성	제안내용(기술)의 차별성 및 독창성	10
과제 수행계획 타당성 (50)	수행과제 목표의 적정성	기술(시제품) 개발의 명확성 및 세부목표의 적정성	20
	수행계획의 구체성과 체계성	사업의 구성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	15
	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적정성	컨소시엄 역할분담 등 운영계획의 적절성	10
	운영계획의 적절성	기술(시제품) 개발 수행을 위한 예산/인력/시설/장비 등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성과관리의 적절성	5
기대효과 (20)	국내 파급효과	학술적(2.5점)·기술적(2.5점)·사회적(2.5점)·경제적(2.5점) 파급효과	10
	기술(시제품) 활용 가능성	개발된 기술(시제품)의 실효성과 실제 데이터센터 산업 현장 및 후속 사업으로의 적용 및 확산 가능성	10
우대사항 (5)	정책 연계성	'24년도 그린DC 고효율 신기술 과제발굴 기획 지원사업 참여기업 포함 여부	(+2.5)
	수요기반 확산가능성	2개 이상의 개발 과제(데이터센터 고효율 신기술(시제품)) 수요처 확보	(+2.5)
합계			100(+5)

7 신청 및 접수 방법

□ 공고 및 접수

▷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5. 06. 03. ~ 06. 16. 18:00 까지 (14일간)

▷ 접수방법: 제안서 및 제출서류 스캔본 이메일 제출

- 이메일 : hds0514@busanit.or.kr

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
AI·AX단 데이터센터팀	김상현 팀장	051-749-9435
		kimsang@busanit.or.kr
	한다솔 대리	051-749-9483
		hds0514@busanit.or.kr

□ 제출서류

순번	제출서류명	작성해당여부		비고
		수행 주관	수행 참여	
1	사업수행계획서	○		- 서명·날인한 표지페이지를 계획서 내 이미지로 삽입 - HWP와 PDF 파일로 제출
2	신청과제 자기점검표(적정성확인서)	○		- 제출서류 붙임 1 - 날인 후 PDF 제출
3	기업(대표자)·기관(기관장)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	○	○	- 제출서류 붙임 2 - 날인 후 PDF 제출
4	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	○	○	- 제출서류 붙임 3 - 서명 후 PDF 제출
5	개인정보 보호 각서	○	○	- 제출서류 붙임 4 - 날인 후 PDF 제출
6	지원사업비 현금현물부담 약약서	○	○	- 제출서류 붙임 5 - 날인 후 PDF 제출
7	직접고용계획효과표	○	○	제출서류 붙임 6
8	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	○	○	제출서류 붙임 7
9	기술(시제품) 수요약약서	○		- 제출서류 붙임 8 - 날인 후 PDF 제출
10	사업자등록증(사업자등록증명원)	○	○	- 국세청 홈택스 이용 (증명원) 2025년 발행본 제출 - 모든 신청기업·기관 제출
11	기업부설연구소 신고증 사본	해당 시	해당 시	
12	기업규모 구분 관련 증빙	○	○	- 모든 신청기업·기관 제출 - 중소·중견기업확인서
13	표준재무제표증명(24년)	○	○	- 전년도 결산보고서 없을 시 전년도(24년) 가정산서 및 최근년도(23년) 결산보고서 제출 - 모든 신청기업·기관 제출
14	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	○	○	모든 신청기업·기관 제출
15	'24년도 그린DC 고효율 신기술 과제발굴 기획 지원사업 참여여부 증빙자료	해당 시	해당 시	해당 시 제출 (협약서, 과제기획안)
16	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	해당 시		- 수행계획, 기술력, 우수성 등 관련 해당 증빙 - PDF·HWP·PPT 등
17	발표자료	○		PPT와 PDF 파일로 제출

*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

*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

□ 유의사항

- ▷ 본 사업에 지원하는 자는 본 공고문 및 붙임자료를 필히 숙지하고 지원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
- ▷ 참여 컨소시엄은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특정기관 소속 참여진이 전체 참여진의 50%를 초과 하지 않도록 구성
- ▷ 컨소시엄의 수행주관기업(기관)을 비롯한 수행참여기업(기관)은 반드시 임직원 등이 참여하여야 함
- ▷ 동 사업은 “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”에 의거하여 편성 및 집행되어야 하며, 공고문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함
- ▷ 본 사업은 발표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심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과제를 선정하며, 평가 및 사업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지원분야별 지원과제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.
- ▷ 사업추진 시 관련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주최), 정보통신산업진흥원(전담), 부산정보산업진흥원(주관)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기

□ 문제사업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

- ▷ 평가과정 혹은 선정 이후라도 허위서류의 제출, 협약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및 보조금 전액 환수처리, 향후 부산시 지원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됨
- ▷ 동 사업 관련 부정·비리가 발생하거나, 혹은 동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이 없어도 참여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할 경우, 해약 및 환수 등 제재 가능

□ 제한조건(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)

- ▷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부산시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▷ 국세·지방세 등의 체납처분,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등록, 파산 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

▷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제안 컨소시엄은 사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
< 평가 제외(사전 지원 제외) 대상 >

1. 기업의 부도
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)
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)
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다만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5.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- 가. 대표이사가 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
 - 나.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
 - 다.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상 초기창업기업(창업 3년 이내)에 해당하는 경우
 - 단, 최종 협약이전 자본잠식을 해소해야 하며, 증빙 미제출 시 차순위 후보자를 선정
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인 경우
7.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
8.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

* 「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 제9조 2항 (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) 적용

□ 관련규정

▷ 해당 과제는 과기정통부 소관 일반회계사업의 일환으로 「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 및 「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·관리규정」을 준용 및 동 규정의 하위 기준에 따름

-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관리규정 (2024.3.27.)
- 기금사업비산정및정산등에관한지침 (2023.11.30.)
- 기금사업성과관리및활용등에관한지침 (2022.1.14.)
- 기금사업점검계획등에관한지침 (2022.1.14.)
- 기금사업협약체결및사업비관리등에관한지침 (2024.10.24.)
- ICT예산정책협의체운영등에관한지침 (2024.3.15.)
- 기금사업결과평가등에관한지침 (2024.3.15.)
- 기금사업수행상황및정산보고등에관한지침 (2021.3.31.)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[별표1] (2025.3.25.)